##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96 조~206조(차량계 건설기계)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·상차·파쇄·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·전도·추락·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·상차·파쇄·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굴착기(Excavator)"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, 하부구조(Undercarriage)의 움직임 없이 360°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(Attachment)의 탈·장착이 가능하고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적용을 받는 장비이다.
  - (나) "선택작업장치(Attachment)"라 함은 굴착기의 암(Arm)과 유압실린더 (Hydraulic Cylinder)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(Quick Coupler)에 작업목 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(Bucket), 브레이커(Breaker), 크램셜(Clamshell) 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.